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8호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4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
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71호, 2023. 8. 1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·불량주택 신축 허용,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,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(안 제40조제10항 등)
 - 1)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

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

- 나.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(안 별표1제1호아목)
 - 1) 「수목원정원법」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
- 다.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 (안 제14조제9호)
 - 1)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·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
- 라.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(안 제19조제7의3)
 - 1)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
- 마.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(안 별표1 제2호다목)
 - 1) 구역 내 일반국도·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,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
- 바. 이축·재축한 노후 주택·근생시설 신축 허용(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)
 - 1)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·근생시설이 노후·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
- 사. 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(안 별표1 제5호라목)
 - 1)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,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

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(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)

- 아.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(안 제40조제4항제2호)
 - 1)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 금의 '물납 허용' 지자체 위임사무에 포함
- 자. 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(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)
 - 1)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제
- 차. 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(안 별표3 제57호)
 - 1)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「국방시설사업법」에 따라 양성화 군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법령안을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녹색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 - ㅇ 일반우편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

ㅇ 팩스: 044-201-5574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「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(044-201-3745, 374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